아름다운 이 수 행복한 시 인

제2021-215호 2021년 11월 16일(화)





보

시정지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1-500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신기휴스트지아파트)

3

공 고

(여수시	공고	제2021-3038호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	4
(여수시	공고	제2021-3042호	국동항 내 장애물(적치물) 제거 공고	6
(여수시	공고	제2021-3046호	「여수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20
(여수시	공고	제2021-3047호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46
(여수시	공고	제2021-3052호	여수시 도시계획도로(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72
(여수시	공고	제2021-3053호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75
(여수시	공고	제2021-3066호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76
(여수시	공고	제2021-3070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대상지 선정)공고	96

기 타

회				
람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여수시 신기동 11번지 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 11. 16.

- 1. 사 업 명 : 여수 신기 휴스티지 아파트
- 2. 사업주체
- 서툴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산동), 하나자산신탁 대표 이창희
- 3. 사업위치 : 여수시 신기동 11번지
- 4.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4,406.6 m²
 - 나. 건축면적 : 2,800.436m²
 - 다. 연 면 적 : 24,410.054 m²
 - 라. 규 모 : 지하2층·지상20층, 1동, 142세대
- 5. 변경내용
 - 가.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101호를 2개호실로 분할함
 - 나.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102호를 3개호실로 분할함
 - 다.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112호를 3개호실로 분할함
 - 라.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129호를 2개호실로 분할함
 - 마. 근린생활시설 일부호실의 분할에 대한 창호도 변경
- 6. 사업기간 : 2020. 4. 15. ~ 2022. 7. 15.
-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659-4095)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구성) 및 제15조(임기)에 따라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위원명단 공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 1. 공고기간 : 2021. 11. 16. ~ 12. 1.(15일간)
- 2. 위원회 인원 : 9명(당연직 2, 위촉직 7)
- 3. 위원회 역할 : 센터 운영 방향, 사업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심의 의결 기능 수행
- 4. 위원명단 : 붙임 참고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교육지원과(☎061-659-4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 구성현황 : 9명(당연직 2, 위촉직 7)

연번	직 명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위원임기	위촉구분 (당연,위촉)	비고
1	위원장	김학섭	남	여수시관광문화 교육국장	재직기간	당연	
2	위 원	이경애	여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재직기간	당연	
3	위 원	송하진	남	여수시의회의원	'20.12.1.~ '22.11.30.	위촉	
4	위 원	박지헌	남	전남대학교교수	'20.12.1.~ '22.11.30.	위촉	
5	위 원	노진식	남	여수노진학취업 멘토학원대표	'20.12.1.~ '22.11.30.	위촉	
6	위 원	박승령	남	여수진남 초등학교교감	'21.11.27.~ '23.11.26.	위촉	
7	위 원	여인경	여	진성여자 고등학교교사	'21.11.27.~ '23.11.26.	위촉	
8	위 원	정현미	여	무선중학교교사	'21.11.27.~ '23.11.26.	위촉	
9	위 원	김미영	여	여수시미래발전 위원회위원	'21.11.27.~ '23.11.26.	위촉	

[※] 위원 명단은 무순입니다.

여수시 공고 제 2021 - 30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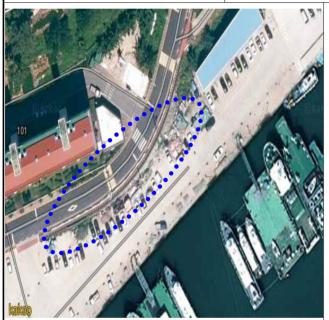
국동항 내 장애물(적치물) 제거 공고

우리시 국동항 내에 무단으로 점유 및 방치되어 있는 장애물(적치물)이 국동항의 효용을 저해하므로「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1년 11월 29일(월)까지 여수시 섬자원개발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6일

- 1. 공 고 기 간 : 2021. 11. 16. ~ 2021. 11. 29. (13일간)
- 2.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적치물(어구 등) 13개
-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어촌·어항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아울러 국동항 내에 폐선을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 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섬자원개발과(061-659-3991)로 연락바랍니다.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20-46/금성휴먼 터치빌 아파트 앞			
물건 제원	적치물(어구)				
관 리 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1-1호	
제거 예정	일자	2021년 11월 30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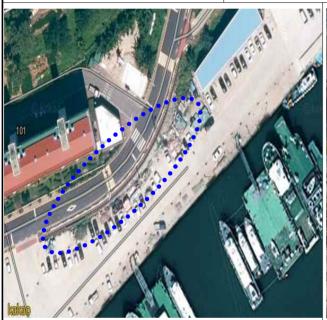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2021년 11월 16일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20-46/금 [,]	성휴먼 터치빌 아파	트 앞		
물건 제원		적치물(어구)				
관 리 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1-2호		
제거 예정	일자	2021년 11월 30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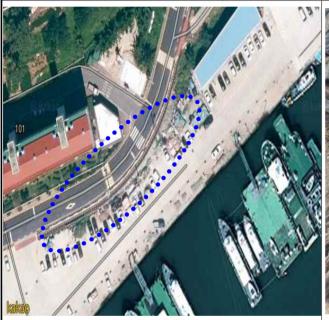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2021년 11월 16일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20-46/금성휴먼 터치빌 아파트 앞				
물건 제원	전 제원 적치물(어구)					
관 리	관 리 청		관 리 번 호	제2021-3호		
제거 예정	일자	2021년 11월 30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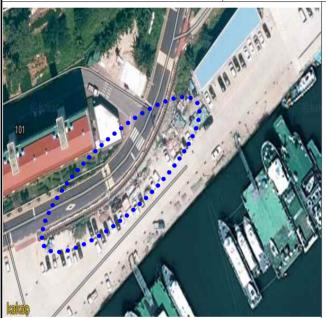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2021년 11월 16일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20-46/금성휴먼 터치빌 아파트 앞				
물건 제원	물건 제원 적치물(어구)					
관 리	관 리 청		관 리 번 호	제2021-4호		
제거 예정	일자	2021년 11월 30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없음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2021년 11월 16일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20-46/금성휴먼 터치빌 아파트 앞				
물건 제원	제원 적치물(어구)					
관 리	관 리 청		관 리 번 호	제2021-5호		
제거 예정	일자	2021년 11월 30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없음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2021년 11월 16일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20-46/금성휴먼 터치빌 아파트 앞				
물건 제원	건 제원 적치물(어구)					
관 리	관 리 청		관 리 번 호	제2021-6호		
제거 예정	일자	2021년 11월 30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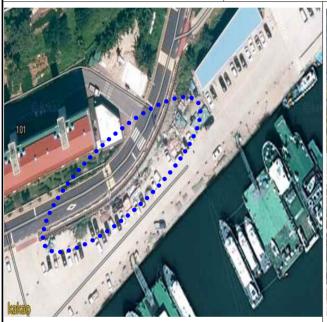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2021년 11월 16일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20-46/금 [,]	성휴먼 터치빌 아파	면		
물건 제원		적치물(어구)				
관 리	 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1-7호		
제거 예정	일자	2021년 11월 30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없음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2021년 11월 16일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20-46/금 [,]	성휴먼 터치빌 아파	트 앞	
물건 제원	적치물(어구)				
관 리 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1-8호	
제거 예정	일자	2021년 11월 30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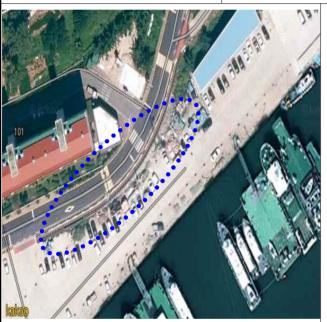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2021년 11월 16일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20-46/금성휴먼 터치빌 아파트 앞				
물건 제원		적치물(어구)			
관 리	관 리 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1-9호				
제거 예정	일자	2021년 11월 30일 이호	후 (공고 종료 이후	후)	
제 거 방	제 거 방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없음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2021년 11월 16일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20-46/금 [,]	성휴먼 터치빌 아파	트 앞	
물건 제원		적치물(어구)			
관 리	관 리 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1-10호				
제거 예정	일자	2021년 11월 30일 이호	후 (공고 종료 이후	후)	
제 거 방	제 거 방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없음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2021년 11월 16일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20-46/금성휴먼 터치빌 아파트 앞				
물건 제원		적치물(어구)			
관 리	관 리 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1-11호				
제거 예정	일자	2021년 11월 30일 이호	후 (공고 종료 이후	후)	
제 거 방	제 거 방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없음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2021년 11월 16일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20-46/금성휴먼 터치빌 아파트 앞				
물건 제원	적치물(어구)				
관 리	관 리 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1-12호				
제거 예정	일자	2021년 11월 30일 이호	후 (공고 종료 이후	후)	
제 거 방	제 거 방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없음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2021년 11월 16일

장애물(적치물)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20-46/금 [,]	성휴먼 터치빌 아파	트	
물건 제원		적치물(어구)			
관 리	관 리 청 여수시 관 리 번 호 제2021-13호				
제거 예정	일자	2021년 11월 30일 이호	후 (공고 종료 이후	후)	
제 거 빙	제 거 방 법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공매 장소 및 일시 해당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없음					





적치물 위치도 및 사진

2021년 11월 16일

여수시 공고 제2021 - 3046 호

여수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청소년수 련관」을 운영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여 수 시 장

1. 위탁 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소 재 지	여수시 학동서4길 58-26 (학동)
시설규모	부 지 : 3,130.9㎡, 연면적 : 2,878.75㎡, (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공연장, 댄스연습실, 체육관, 당구장, 방과후아카데미, 북카페 특별활동실,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상담실, 동아리방 등

2. 위탁기간 : 5년(2022. 1. 1. ~ 2026. 12. 31.)

3. 위탁내용 및 위탁사무

가. 위탁시설 유지·관리

- 시설명 : 여수시청소년수련관(여수시 학동서4길 58-26(학동))

나. 위탁사무

-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 · 자율 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 지원
-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그 밖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탁운영 재원 : 연422,801천원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변동, 시 재정 여건 등 에 따라 보조금 변동 가능

5. 신청자격

- 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2)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3)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4)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5)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나. 결격사유

- 1) 법인대표자 및 임원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
- 2)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제72조까지 규정 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6.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조건

- 1)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을 취소함.
- 2) (종사자 고용승계)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 신규 수탁기관은 고용 승계하여함.
- 3) 시설의 운영은 공공성·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특 정계층이나 집단(종교·정치)의 활동을 금함.
- 4) 여수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하되, 자체부 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련관 운영 인력은 9명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운영대표자(시설장) 및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함.
- 5) 수련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집행 및 관리
- 6) 수탁기관이 의무 이행 보증을 위하여 연간사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가입기간 5년)을 예치하여야 함.
- 7) 구체적인 위탁조건은 여수시장과 수탁기관 간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 할 때에 명시

7. 공고기간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11. 16.(화) ~ 11. 22.(월) (7일간)

나. 접수기간 : 2021. 11. 22.(월) ~ 11. 23.(화) (2일간 근무시간 내)

다. 접수장소 : 여수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061) 659-3752)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근무시간외 도착서류 및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마. 신청서류

- 1) 수탁운영신청서 1부(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2) 서류제출확인서 1부
- 3) 수탁시설 운영계획 요약서 1부

- 4) 법인(단체) 현황 각1부
- 사용인감계,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 5) 법인의 임원 및 자산현황 1부
- 6) 최근 3년(2018~2020년도) 결산서 1부
- 7) 운영(예정) 시설장 이력서(경력 및 자격증 사본 등) 1부
- 8) 서약서 1부
- 9) 재정부담 확약서 1부
- 10) 수탁제안서 1부
- 법인(단체)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실적, 시설운영계획서 외

8. 선정방법 및 심의기준

- 가. 심의시기 : 심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
- 나.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1)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평점이 높은 법인(단체)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2) 신청 접수 결과 단독신청인 경우에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점수 1인과 최저 점수 1 인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계하여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심의결과 70점 이상 받은 법인이 없을 경우 재공고한다.
 - 3) 총점이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으로 높은 점수에 의거 산정
 - 기관의 운영 기반 ⇒ 사업운영계획 ⇒ 시설경영계획
- 다. 수탁신청기관 대표자는 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제안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1) 주요내용 : 심의당일 기관별 제안서(PPT) 발표 후 질의응답
 - 2) 발표순서 : 신청서 접수 순 ※ PPT 파일은 심의당일 USB로 제출
 - 3) 발표시간 : 기관당 PPT 15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 4) 참 석 자 : 기관당 2인(대표, 관리자)
- 라.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함(붙임1)
 - 수탁기관 적격성(20점), 시설에 대한 이해(15점), 시설운영계획(65점)

9. 심의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 가. 심의결과는 개별 통지 함
- 나. 선정된 수탁기관과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 함.

10. 기타사항

- 가. 신청서류는 순서에 의거 A4 규격으로 편철하여 각 11부 작성하되 목차, 하단에 쪽페이지 표기, 라벨부착 하여 좌철 하여야 함.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탁기관 선정이 무효 처리됨.
- 다. 사업신청서 원부 1권은 각 페이지에 사용인감을 간인하여야 함.
- 라.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061) 659-3752)로 문의 바람.

『붙임 1』

여수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심사 기준

□ 심사항목 : 7개항목 15분야

심사부문	심사항목	심사지표(기준)	배점 기준
수탁기관의 적격성	기관의 운영기반	- 기관의 목표와 방향의 적합성 -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 기관의 재무구조의 적정성	5
(20)	사업수행 실적	-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 사업 수행의 전문성	15
시설에 대한 이해 (15)	수탁의 목적과 취 지	- 수탁목적의 타당성 -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도	5
	중장기발전 전략	- 중장기 발전 방향의 타당성 및 발전전략과 계획의 구체성	10
시설운영계획 (65)	사업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체계성, 구체 성 - 청소년참여 계획의 적절성	25
	시설경영계획	-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 - 시설·설비 관리의 적절성 -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 이용활성화 방안의 타당성	25
	지역협력계획	-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적절성 및 지역사회 협력의 가능성	15





「여수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기관 신청 서류



2021.

(법인·단체 명)

신청서식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 본 페이지는 참고만 하며 삭제 후 제출
- 신청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총 11부(워본 1부, 사본 10부) 제출
 - A4 규격으로 좌철하고,
 - 증빙서류는 별지로 구분, 신청서류 뒷부분에 편철
- 심사의 편의를 위해 목차, 쪽번호를 기재하고 라벨 부착
- 별도 작성 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신청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허위, 날조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
 - 증빙서류의 <u>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u>여야 하며 <u>재산 증빙서류</u>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의 발급 기준일자는 공고일 전일임
 - ※ 재산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사업계획서는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서식 1】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 신청서

	시 설 명	
신	법인(단체)명	
청	성명(대표자)	법인(단체) 등록번호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주	요사업내용	
특	- 기 사 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제4조 등에 따라 여수시청소년수련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 첨부 1. 수탁운영 신청서 : 붙임 양식<서식1> ※ 위임시 위임장 : 붙임 양식<서식1-2>
 - 2. 서류제출확인서 : 붙임 양식<서식2>
 - 3. 수탁시설 운영계획 요약서(A4용지 3매 이내)<서식3>
 - 4. 법인(단체) 현황<서식4> * 아래 ①~⑥ 증빙자료 각 1부씩 첨부
 - ① 사용인감계<서식4-1> ② 법인(단체)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③ 법인(단체)등기부등본 ④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 ⑥ 법인설립허가증(법인에 한함)
 - 5. 법인의 임원 및 자산현황(2021. 9월말 기준 증빙서류 포함) 1부
 - 6.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8~2020년도)결산서(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 7. 운영(예정) 시설장 이력서(경력 및 자격증 사본 첨부)
 - 8. 서약서<서식5>
 - 9. 재정부담 확약서<서식6>
 - 10. 수탁제안서<서식7>
 - 법인(단체)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실적(최근 3년간)
 - 시설운영계획서(향후5년간): 프로그램, 시설물 확보(관리), 운영비 조달계획 등
 - 기타 위탁자 결정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법인 ㆍ단체의 운영실적, 수상경력,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등)

2021년 월 일

기관ㆍ단체명 : (직인)

신청인 대표자 성명 : (인감 인)

여수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운영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법인확인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서식 1-2】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인(단체)명	연 락 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	소		
	법인(단체)명	연 락 처	☎ H.P: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수탁사업자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리인: (인)

여수시장 귀하

-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대표자의 도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2】

서류 제출 확인서

본인은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수탁사업자 선정에 대한 신청서류 및 사업평가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법인(단체)명	대표자	(인)
전 청	주 소	전화번호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수탁운영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여수시장 귀하

절	취	선
(91)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수탁사업자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지	2021년	월	일
법인(단체)명					
주 소					
대표자		7	세출자 :		
접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3]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요약서

구	분		주	요	내	හි
단 처	명					
시설운영	경 목적					
주요사	걸계획	○ 향후 5년?○ 특수사업	사업 계획	획(연도	단위로	작성)

	□ 조2	딕(시설조격	되 및 9	기력규	모)							
	0 2	각 위탁시: 위탁단체으	설별 관	 <u>-</u> 계규정	성 등어		한 범위	식내에	서,			
	□ 종/	사인력(종 <i>/</i>	사인력	확보	방안)							
	□ 5년	간의 예신	운영 :	계획 (서식변	경가능	:)			(단	위 :	천원)
	구 분		제1차년도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제4호	제4차년도 제5차		·년도
		합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체운영										
	세입	수익금										
		보조금										
시설운영계획		기타										
		합계										
	3.5	인건비										
	세출	물건비										
		사업비										
	○ 자체 운영수입금 확보방안, 보조금지원 규모, 법인의 청소년 시설 지원계획 등 ○											
	□ 시설물 확보(관리)계획 * 각 시설별 위탁조건 및 시설구비 조건 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위탁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 ○ ○											
법인(단체)현황	○ 법인(단체)의 조직, 임원, 자산 등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예산 등											
기타사항	O 최근	근 3년 이	내 청소	Ľ년시실	설 (위트	탁)운영	실적	믕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서식 4]

법인(단체)현황

- 1. 설립일자 : 년 월 일
- 2. 설립목적 :
- 3. 주요사업
- 4. 소 재 지 : (전화 :)
- 5. 대 표 자 (주요경력 및 자격증, 연구논문 등)
- 6. 단체(법인) 주요인원 현황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비고

- 7. 상근직원 : 명
- 8. 회원수: 명
- 9. 재정상태(2020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재 원	비고
계 : • 보조금 • 자부담 • 후원금 • 기타	● 운영비 • 사업비 • 기타	 회원회비 (%) 국가 지방자치단체 (%) 법인지원 (%) 후원금 (%) 수익사업 (%) 	

【서식 4-1】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운영」수탁사업자 공모 제안 신청·협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단체 등)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021년 월 일

주 소:

법인(단체)명: (인)

대표자 :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여수시장 귀하

서 약 서

법인(단체])명:
법인(단체])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	성명: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위탁단체 선정을 위한 위탁운영 신청과 관 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제출한 모든 서류와 관련 자료는 사실에 근거해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법률적·재정적·행정적)을 감수하겠습니다.
- 2.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 선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3.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 및 여수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여수시장 귀하

재정부담 확약서

(자부담 계획이 있을 경우)

□ 법인(□ 주	단체)명: 단체)등록번호: 소: 사 성명:		
상기 법]인(단체)은 여수시청	청소년수련관 수탁기관으로 선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	에 사업비 보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이
래와 같이	부담 및 지원할 것	읔 화약합니다	
		E 7 1 B 1 1 1 .	
□ 법인(단체) 자부담 지원방	·법	
			(단위: 천원
			_
연도	부담액	부담방법	비고
연도 계	부담액	부담방법 예) 매년 1월 현금 지원	비고
	부담액		비고
계	부담액		비고
계 2022년	부담액		비고
계 2022년 2023년	부담액		비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부담액		비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부담액	예) 매년 1월 현금 지원	비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 매년 1월 현금 지원	비고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1	예) 매년 1월 현금 지원	비교 (인)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1 법인	예) 매년 1월 현금 지원 년 월 일 (단체)명 :	(인)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1 법인 대표	예) 매년 1월 현금 지원 년 월 일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법인(단체 등) 부담 출연 계획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사본 1부

【서식 7】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수탁제안서

2021. .

(단 체 명)

- 목 차 -

- I. 제안의 배경
 - 1. 제안의 목적
 - 2. 제안의 방향
 - 3. 제안의 내용
- Ⅱ. 수탁기관의 현황
 - 1. 수탁기관의 일반 현황
 - 2. 수탁기관의 주요 실적
 - 3. 수탁기관의 재정 현황
- Ⅲ. 발전계획의 방향
 - 1. 중장기 발전전략
 - 2. 연도별 발전전략
- IV. 사업운영계획
 - 1. 목표체계
 - 2. 사업계획
 - 3. 청소년참여계획
- V. 시설경영계획
 - 1. 조직운영계획(시설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포함)
 - 2. 시설관리계획
 - 3. 재정운영계획
 - 4. 시설홍보계획
 - 5. 서비스만족도 제고 계획
 - 6. 청소년이용활성화 계획
 - 7. 경영윤리실천 계획
 - 8. 기관평가개선 계획
- VI. 지역협력계획
 - 1. 지역기관 협력계획
 - 2. 지역자원 활용계획
 - 3. 지역청소년 지원계획

[참고자료]

- 1. 기관 인력 현황 자료
- 2. 수탁시설 종사(예정)자 현황 자료
- 3. 기관의 사업실적 자료
- 4. 기관의 재무현황 자료
- 5. 기관에 대한 평가 자료(있을 경우)
- 6. 기타 부문별 입증(설명) 자료

I. 제안의 배경

1.	제안의	목적
----	-----	----

 \bigcirc

2. 제안의 방향

 \bigcirc

3. 제안의 내용

 \bigcirc

Ⅱ. 수탁기관의 현황

1. 기관의 일반 현황

○ 법인(단체)명 : (전화)

- 소 재 지 :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	주요경력	자격내용	비고

○ 조직도 및 인력구성

- 구성원수 : 명(상근 직원수 : 회원수 :)

- 조직도(기구표)

- 인력구성 현황

연번	직 위	성 명	담당업무내용	자격증 소유 (종류, 등급 등)	비고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함(법인 산하시설 업무 겸직 직원 제외)

()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비고

2. 기관의 주요 실적

 \bigcirc

- ※ 설립이후 연도별 주요사업실적 요약 작성
- 최근 3년간(2018~2020년) 청소년사업(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실적 ※ 연도별 별도작성 (증빙자료 첨부)
 - 자체운영시설

연도별	시설명	사업내용	C	비고		
한포글	시결정	사립네공	계	보조금	자부담	-1

- 수탁시설 운영

연도별	시설명	사업내용	C	ᅨ산액(천 원)	비고
	시킬링	사람네 ㅎ	계	보조금	자부담	0176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결과(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 법인·단체 운영관련 외부기관의 상·벌 사항(증빙자료 첨부)

	상·훈 시	·항	지적 사항			
일 자	표창기관	내 용	일 자 관련기관 내용			

3. 법인(단체)의 재정 현황

※ 공고일 기준

○ 재산 총괄표

(단위: 천원)

7 8	합계		순자산		부채(C)	비고
구분	답게	계(A+B)	부 동 산(A)	동산(B)	구세(니)	-1 -1/-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 익 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 재산성질별 현황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1) 토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총 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비고란: 현 이용실태 작성

※ 첨부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등

2) 건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 과표	총 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비고란: 현 이용실태 작성

※ 첨부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등

나. 수익용 기본재산

1) 토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총 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2) 건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 과표	총 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기타 연간 수익사업 기재(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구체적으로 기재)

Ⅲ. 발전계획의 방향

1.	중장기	발전전략
	0 0 1	

 \bigcirc

 \bigcirc

2. 연도별 발전전략(2022-2026년)

 \bigcirc

 \bigcirc

Ⅳ. 사업운영계획

	1. 목표체계									
	2. 사업계획((2022년)								
	\bigcirc									
	\bigcirc									
	3. 청소년참여	여계획								
	\bigcirc									
	\bigcirc									
_										
V	. 시설경영	계왹								
	1. 조직운영	계획 (시설장 및 종	사자 확보계획	포함)						
	○ 기구 및	· 조직								
	○ 시설장(예정자)의 전문성	}							
	- 시설장	(예정자)의 학력	및 관련 자격	증 소지(증빙지	-료 첨부)					
	성 명	생년월일	현직(경력)	학력(학과)	자 격 증	비고				
	- 시설장(예정자)의 청소년관련 주요경력									
	소속기관	직 위	근무기간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	비고				
	○ 종사자	확보 및 관리계	<u>य</u>							

2. 시설관리계획

- 시설물 확보(관리)계획
 - * 각 시설별 위탁조건 및 시설구비 조건 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위탁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

 \bigcap

3. 재정운영계획

○ 5년간의 예산운영 계획 * 서식 변경 가능

(단위: 백만원)

ī	1 분	제1호	·년도	제2호	년 도	제3호	·년도	제4호	년도	제5호	년도
	합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세입	자체운영 수익금										
	보조금										
	기 타										
	합 계										
	인건비										
세출	물건비										
	사업비										
	기 타										

_									
	기	타							
\bigcirc	자체	운영	경수입금	급 확보	.방안(2	022 ~2	6년)		

○ 법인의 청소년 시설 지원계획 등 ※ 운영비 부족 시 재워 조달방안 포함

4. 시설홍보계획

○ 보조금지원 규모

 \bigcirc

 \bigcirc

5. 서비스만족도 제고 계획

 \bigcirc

 \bigcirc

6. 청소년이용활성화 계획
\bigcirc
\bigcirc
7. 경영윤리실천 계획
\bigcirc
\bigcirc
8. 기관평가개선 계획
\bigcirc
\bigcirc
VI. 지역협력계획
VI. 지역엽력계획1. 지역기관 협력계획
1. 지역기관 협력계획
1. 지역기관 협력계획
1. 지역기관 협력계획○
1. 지역기관 협력계획○
1. 지역기관 협력계획○
 지역기관 협력계획 ○ ○ 2. 지역자원 활용계획 ○ ○
1. 지역기관 협력계획 ○ 2. 지역자원 활용계획 ○ 3. 지역청소년 지원계획
1. 지역기관 협력계획 ○ 2. 지역자원 활용계획 ○ 3. 지역청소년 지원계획 ○

여수시 공고 제2021 - 3047호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1 년 11 월 16 일

여 수 시 장

1. 위탁 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소 재 지	여수시 학동서4길 58-26 (학동) 청소년수련관 내 2층
시설규모	연면적 : 235㎡
주요시설	체험관, 교육장, 사무실 등

2. 위탁기간 : 3년(2022. 1. 1. ~ 2024. 12. 31.)

3. 위탁내용 및 위탁사무

가. 위탁시설 유지·관리

- 시설명 :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여수시 학동서4길 58-26(학동) 여수시청소년수련 과 2층)

나. 위탁사무

-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성문화체험관 운영
-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성교육
- 아동복지시설,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활동
- 학교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위탁운영 재원 : 168,362천원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변동, 시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보조금 변동 가능

5. 신청자격

- 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 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 2)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 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 3)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고려 가능)
-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고려 가능) 나. 결격사유
 - 1) 법인대표자 및 임원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
 - 2)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제72조까지 규정 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조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성가족부「202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사업 운영 지침」,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 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을 취소함
- 2) (종사자 고용승계)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 신규 수탁 법인은 고용 승계하여함.
- 3) 시설의 운영은 공공성·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특정계층이나 집단(종교·정치)의 활동을 금함.
-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도비 지원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기타 필요한 운영경비는 관련 법인에서 자체조달 하며, 운영 인력은 5명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운영대표자(시설장) 및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함
- 5)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로 투입
- 6)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 보증을 위하여 연간사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가입기간 3년)을 예치하여야 함.
- 5) 구체적인 위탁조건은 여수시장과 수탁기관 간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

7. 공고기간 및 접수

- 가. 공고기간 : 2021. 11. 16.(화) ~ 11. 22.(월) (7일간)
- 나. 접수기간 : 2021. 11. 22.(월) ~ 11. 23.(화) (2일간 근무시간 내)
- 다. 접수장소 : 여수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061) 659-3752)
-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 근무시간외 도착서류 및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마. 신청서류
 - 1) 수탁운영신청서 1부(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2) 서류제출확인서 1부
 - 3) 수탁시설 운영계획 요약서 1부
 - 4) 법인(단체) 현황 각 1부
 - 사용인감계,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법인설립허기증
 - 5) 법인의 임원 및 자산현황 1부
 - 6) 최근 3년(2018~2020년도) 결산서 1부
 - 7) 운영(예정) 시설장 이력서(경력 및 자격증 사본 등) 1부
 - 8) 서약서 1부
 - 9) 재정부담 확약서 1부

- 10) 수탁제안서 1부
 - 법인(단체)의 청소년관련 기관 위탁 운영 실적, 시설운영계획서 외

8. 선정방법 및 심의기준

- 가. 심의시기 : 심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
- 나.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1)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평점이 높은 법인(단체)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2) 신청 접수 결과 단독신청인 경우에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점수 1인과 최저점수 1인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계하여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심의결과 70점 이상 받은 법인이 없을 경우 재공고한다.
 - 3) 총점이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으로 높은 점수에 의거 산정
 - 법인(단체)의 운영 기반 ⇒ 사업운영계획 ⇒ 시설경영계획
- 다. 수탁신청기관 대표자는 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제안 설명 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1) 주요내용 : 심의당일 기관별 제안서(PPT) 발표 후 질의응답
 - 2) 발표순서 : 신청서 접수 순 ※ PPT 파일은 심의당일 USB로 제출
 - 3) 발표시간 : 기관당 PPT 15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 4) 참 석 자 : 기관당 2인(대표, 관리자)
- 라.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함(붙임1)
 - 수탁법인(단체) 적격성(35점), 시설운영계획(65점)

9. 심의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 가. 심의결과는 개별 통지 함
- 나. 선정된 수탁기관과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 함.

10. 기타사항

- 가. 신청서류는 순서에 의거 A4 규격으로 편철하여 각 11부 작성하되 목차, 하단 쪽페이지 표기, 라벨 부착 하여 좌철 하여야 함.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탁기관 선정이 무효 처리됨.

- 다. 사업신청서 원부 1권은 각 페이지에 사용인감을 간인하여야 함.
- 라.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061) 659-3752)로 문의 바람.

『붙임 1』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심사 기준

□ 심사항목 : 6개항목 13분야

심사부문	심사항목	심사지표(기준)	배점 기준
	법인(단체)의 운영기 반	- 법인(단체)의 목표와 방향의 적합성 - 법인(단체)의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 법인(단체)의 재무구조의 적정성	15
수탁법인(단 체)의 적격성 (35)	사업수행 실적	-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 사업 수행의 전문성	10
	수탁의 목적과 취지	- 수탁목적의 타당성 -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체계성, 구체성 -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	30
시설운영계획 (65)	시설경영계획	-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 - 시설·설비 관리의 적절성 -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지역협력계획	- 지역사회와의 협력 연계방안 구축 및 자원동원, 활용방안	10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관 신청 서류



2021.

(법인·단체 명)

신청서식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 본 페이지는 참고만 하며 삭제 후 제출
- 신청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총 11부(워본 1부, 사본 10부) 제출
 - A4 규격으로 좌철하고,
 - 증빙서류는 별지로 구분, 신청서류 뒷부분에 편철
- 심사의 편의를 위해 목차, 쪽번호를 기재하고 라벨 부착
- 별도 작성 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신청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허위, 날조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
 - 증빙서류의 <u>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u>여야 하며 <u>재산 증빙서류</u>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의 발급 기준일자는 공고일 전일임
 - ※ 재산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사업계획서는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서식 1】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시 설 명	
신	법인(단체)명	
청	성명(대표자)	법인(단체) 등록번호
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주	요사업내용	
특	- 기 사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등에 따라 여수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 첨부 1. 수탁운영 신청서 : 붙임 양식<서식1> ※ 위임시 위임장 : 붙임 양식<서식1-2>
 - 2. 서류제출확인서 : 붙임 양식<서식2>
 - 3. 수탁시설 운영계획 요약서(A4용지 3매 이내)<서식3>
 - 4. 법인(단체) 현황<서식4> * 아래 ①~⑥ 증빙자료 각 1부씩 첨부
 - ① 사용인감계<서식4-1> ② 법인(단체)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③ 법인(단체)등기부등본 ④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 ⑥ 법인설립허가증(법인에 한함)
 - 5. 법인의 임원 및 자산현황(2021. 9월말 기준 증빙서류 포함) 1부
 - 6.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8~2020년도)결산서(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 7. 운영(예정) 시설장 이력서(경력 및 자격증 사본 첨부)
 - 8. 서약서<서식5>
 - 9. 재정부담 확약서<서식6>
 - 10. 수탁제안서<서식7>
 - 법인(단체)의 청소년 관련 기관 위탁 운영 실적(최근 3년간)
 - 시설운영계획서(향후3년간): 프로그램, 시설물 확보(관리), 운영비 조달계획 등
 - 기타 위탁자 결정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법인 : 단체의 운영실적, 수상경력,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등)

2021년 월 일

기관ㆍ단체명 : (직인)

신청인 대표자 성명 : (인감 인)

яшч 00 .

여수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운영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법인확인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서식 1-2】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인(단체)명	연 락 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	소		
	법인(단체)명	연 락 처	☎ H.P: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사업자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리인: (인)

여수시장 귀하

-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대표자의 도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2】

서류 제출 확인서

본인은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사업자 선 정에 대한 신청서류 및 사업평가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법인(단체)명	대표자	(인)
건 청	주 소	전화번호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수탁운영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여수시장 귀하

(인)절	취	선(인)
------	---	------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사업자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1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대표자		제	출자 :		
접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⁶	<u>'l</u>)

[서식 3]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계획 요약서

구	분		주	요	내	ල
단 처	명					
시설운영	병 목적					
주요사	업계획	○ 향후 3년간의 ²○ 특수사업 계획		획(연도	단위로	작성)

	T					
시설운영계획	□ 조직(시설조직 및 ○ 각 위탁시설별 위탁단체의 실정 □ 종사인력(종사인력 ○ 3년간의 예산운영	관계규정 등에 경에 맞도록 작성 기획 제1차년도 금 액 비 대 기차년도 금 액 비 대 기차년도 금 액 비 대 대 기차년도 금 액 비 대 기차년도 금 액 비 대 기획 기실구비	조금지원	제2차년 <u>!</u> - 액 규모, 법	도 비율 인의 2	도 비율
법인(단체)현황	○ 법인(단체)의 조직, 임원, 자산 등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예산 등					
기타사항	○ 최근 3년 이내 청:	소년관련 기관 ((위탁)운영	병 실적 등	<u>=</u>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서식 4]

법인(단체)현황

【법인명	:]

- 1. 설립일자 : 년 월 일
- 2. 설립목적 :
- 3. 주요사업
- 4. 소 재 지 : (전화 :)
- 5. 대 표 자 (주요경력 및 자격증, 연구논문 등)
- 6. 단체(법인) 주요인원 현황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비고

- 7. 상근직원 : 명
- 8. 회 원 수 : 명
- 9. 재정상태(2020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재 원	비고
• 자부담	계 :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기타	 회원회비 (%) 국가 지방자치단체 (%) 법인지원 (%) 후원금 (%) 수익사업 (%) 	

【서식 4-1】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수탁사업자 공 모 제안 신청·협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법인(단체)명: (인)

대표자 :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5】

서 약 서

법인(단체])명:
법인(단체])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	성명: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단체 선정을 위한 위탁운영 신청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제출한 모든 서류와 관련 자료는 사실에 근거해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법률적·재정적·행정적)을 감수하겠습니다.
- 2.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 선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3.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 및 여수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여수시장 귀하

재정부담 확약서

(자부담 계획이 있을 경우)

□ 법인(□ 법인(□ 주□ 대표>	단체)등록번호: 소:		
경우 보조			_
			(단위: 천원)
연도	부담액	부담방법	(단위: 천원) 비고
연도 계	부담액	부담방법 예) 매년 1월 현금 지원	
_	부담액		
_ 계	부담액		
계 2022년	부담액		
- 계 2022년 2023년			
- 계 2022년 2023년		예) 매년 1월 현금 지원	
- 계 2022년 2023년	2021	예) 매년 1월 현금 지원	
- 계 2022년 2023년	2021 법인	예) 매년 1월 현금 지원 년 월 일	비고
- 계 2022년 2023년	2021 법인 대표	예) 매년 1월 현금 지원 년 월 일 (단체)명 :	비고 (인)

여 수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법인(단체 등) 부담 출연 계획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사본 1부

【서식 7】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제안서

2021. .

(단 체 명)

- 목 차-

- I. 제안의 배경
 - 1. 제안의 목적
 - 2. 제안의 방향
 - 3. 제안의 내용

Ⅱ. 수탁법인(단체)의 현황

- 1. 법인(단체)의 일반 현황
- 2. 법인(단체)의 주요 실적
- 3. 법인(단체)의 재정 현황

Ⅲ. 사업운영계획

- 1. 목표체계
- 2. 사업계획
- 3. 청소년참여계획

IV. 시설경영계획

- 1. 조직운영계획(시설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포함)
- 2. 시설관리계획
- 3. 재정운영계획
- 4. 시설홍보계획
- 5. 서비스만족도 제고 계획
- 6. 아동청소년이용활성화 계획
- 7. 경영윤리실천 계획
- 8. 기관평가개선 계획

V. 지역협력계획

- 1. 지역기관 협력계획
- 2. 지역자워 활용계획
- 3. 지역청소년 지원계획

[참고자료]

- 1. 법인(단체) 인력 현황 자료
- 2. 수탁시설 종사(예정)자 현황 자료
- 3. 법인(단체)의 사업실적 자료
- 4. 법인(단체)의 재무현황 자료
- 5. 기타 부문별 입증(설명) 자료

I. 제안의 배경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방향
3.	제안의	내용

Ⅱ. 수탁법인(단체)의 현황

1. 법인(단체)의 일반 현황

○ 법인(단체)명 :	(전화)
○ 소 재 지 :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bigcirc	대	丑	자
\sim	٠,	_	'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	주요경력	자격내용	비고

\bigcirc	조직도	및	인	력구성
------------	-----	---	---	-----

- 구성원수 : 명(상근 직원수 : 회원수 :)

- 조직도(기구표)

- 인력구성 현황

연번	직 위	성 명	담당업무내용	자격증 소유 (종류, 등급 등)	비고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함(법인 산하시설 업무 겸직 직원 제외)

○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미

2. 법인(단체)의 주요 실적

- ※ 설립이후 연도별 주요사업실적 요약 작성
- 최근 3년간(2018~2020년) 청소년사업(성교육 및 성범죄예방교육 등) 실적 ※ 연도별 별도작성 (증빙자료 첨부)
 - 자체운영시설

연도별	시설명	명 사업내용	C	нι¬		
신포될	시크이	사람세공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 수탁시설 운영

연도별 시	시설명	사업내용	C	비고		
한포글	시결당	사립네 공	계	보조금	자부담	014

○ 법인·단체 운영관련 외부기관의 상·벌 사항(증빙자료 첨부)

	상·훈 사형	ļ.	지적 사항			
일 자 표창기관 내 용			일 자 관련기관 내용			

3. 법인(단체)의 재정 현황

※ 공고일 기준

○ 재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순자산		부채(C)	비고
十世	납계	계(A+B)	부 동 산(A)	동산(B)	구세(८)	-1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 익 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 재산성질별 현황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1) 토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총 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비고란: 현 이용실태 작성

※ 첨부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등

2) 건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 과표	총 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비고란: 현 이용실태 작성

※ 첨부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등

나. 수익용 기본재산

1) 토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총 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2) 건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 과표	총 가액 (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기타 연간 수익사업 기재(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구체적으로 기재)

Ⅲ. 사업운영계획

1.	목표체계
(
(
2.	사업계획
(
	$\overline{}$

3. 청소년참여계획

0							
 ○ IV. 시설경영계획 1. 조직운영계획(시설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포함) ○ 기구 및 조직 ○ 시설장(예정자)의 전문성 							
- 시	- 시설장(예정자)의 학력 및 관련 자격증 소지(증빙자료 첨부)						
	- 시설장(예정자)의 청소년 및 성교육 관련 주요경력						
소쪽	기관	직 위	근무기간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	비고	
○ 종사자 확보 및 관리계획 - 2. 시설관리계획 ○ 시설물 확보(관리)계획 * 각 시설별 위탁조건 및 시설구비 조건 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위탁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 ○							
3. 재정	운영계혹	<u> </u>					

○ 3년간의 예산운영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제1차년도		제2차년도		제3차년도	
	합 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세입	자체운영수익금						
	보조금						
	기 타						
	합 계						
	인건비						
세출	물건비						
	사업비						
	기 타						

포함

○ 보조금지원 규모
○ 법인의 청소년기관 지원계획 등
※ 운영비 부족 시 재원 조달방안
4. 시설홍보계획
\bigcirc
\bigcirc
5. 서비스만족도 제고 계획
\bigcirc

6. 청소년이용활성화 계획

7. 경영윤리실천 계획

 \bigcirc

○ 자체 운영수입금 확보방안

8. 기관평가개선 계획
\bigcirc
V. 지역협력계획
1. 지역기관 협력계획
\bigcirc
\bigcirc
2. 지역자원 활용계획
\bigcirc
\bigcirc
3. 지역청소년 지원계획
\bigcirc

여수시 공고 제2021 - 305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6.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2020.6.30. ~ 2022.12.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여수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 심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공구	여수시 안산동 540-9번지 일원	○면적 및 규모 - 면적: (기정) 1,702㎡ (변경) 1,413.8㎡ - 규모: L= 110m B= 8.0m	여수시장/ 여수시 시청로 1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 업 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여수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개설공사(2공구)	여수시 도로과	2021. 11. 16. ~2021. 11. 30.(15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11. 16. ~ 2021. 11. 30.(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2061-659-4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mark>(변경</mark>)

adul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연번			지목	면적 (㎡)	면적 (㎡)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성명	주소	- 비 고 	
1	여수시 안산동	540-9	대	723	723	여수시 심곡길 17-*	김*수				기정	
	여수시 안산동	540-9	대	723	590	여수시 심곡길 17-*	김*수				변경	
2	여수시 안산동	548-1	대	420	420	여수시 심곡길 17-*	김*수				기정	
	여수시 안산동	548-15	대	420	334	여수시 심곡길 17-*	김*수				변경	
3	여수시 안산동	541	전	58	55	여수시 안산6길 5-** (안산동)	김*숙				기정	
	여수시 안산동	541-2	전	55	37	여수시 안산6길 5-** (안산동)	김*숙				변경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업명	심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공구)						
사업장 위치	여수시 안산동 540-9외 일원						
사업자	전라남도 여수시장						
이거ᆌ츠키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1-3053호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여 수 시 장

1. 시정명령 대상 업체

상	상 호 대표자 처분업종 (등록번호)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오륜기업(주)		최 * 식	포장공사업 (여수2019-14-01)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시정 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 2. 시정명령일시: 2021. 11 . 16.
- 3. 시정명령 이행기간: 2021. 11. 16. ~ 11. 30.
- 4. 법 적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 명령) 제3호
- 5. 시정명령내용: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억 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1억 원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 원이상을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도급·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기일까지 통보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6. 만약 시정명령 기일까지 미 통보 시 과태료 처분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7.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 고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6.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여수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하는 사랑방 좌담회 통해 수렴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감·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관리비용의 지원의 범위에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u>제6조제1호에 해당**</u>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
 - ※ 공동주택의 근로자에 대한 기본시설(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
- 나. 관리비용 지원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본문에 명시함. (안 제3조, 별표1)

- 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전용면적이 57㎡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 수의 80%이상인 공동주택은 <u>시 분담률을 95%로</u>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별표1)
- 라. 공동주택 지원위원회 구성 시 아파트 연합회 추천한 자 포함(안 제7조) 1)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고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2) 지원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 대상자 중 <u>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u>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함.
- 3) 지원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 대상자에 <u>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u> <u>연합회 여수지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2명(이내)을 포함하도록 함.</u>
- 3. 입법예고기간 : 2021. 11. 16. ~ 12. 6.(21일간)
-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허가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 받는사람 : 여수시장(허가민원과장)
 - 전 화: 061-659-4098 팩스: 061-659-5836
 - 이 메 일 : sjhr7@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찬성	여부	0124(710)		
내용	찬성 반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관리비용 지원

- 제2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기준)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사용검사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1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1. 6. 30. 단서 신설 2021. 6. 30.>
 -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 나.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 <개정 2021. 6. 30.>
 - 다.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신설 2021. 6. 30.>

- 2.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단지 내 도로 보수
 - 나.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
 - 다.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 라.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 마.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 바.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 · 개선
 - 사.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 증강
 - 아.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 자.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친환경시설 및 택배물품 보관시설의 설치·개선 <개정 2021. 6. 30.> 차.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개량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7조에 따른 여 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1 호에 해당하는 사업
- ② 여수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0.>
- 1.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설 2021. 6. 30.>

2.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설 2021. 6. 30.>

[본조 제목 개정 2021. 6. 30.]

- 제3조(관리비용의 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제1호·제2호·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등을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6. 30.>
 - ② <삭제 2021. 6. 30.>
- 제4조(관리비용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에, 제7조에 따른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6. 30.>②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 시기, 노후정, 단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심사 후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제5조(사업비의 부담) ① 해당연도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액은 별표1의 분담 비율 이내로 하며, 수립된 지원예산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도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전용면적이 57㎡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이상인 공동주택은 시 분담률을 100분의 95로 할 수 있다.
- 제5조의2(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 호·제5호·제7호·제8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만 제출한다.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요청한 범위에서 교부신청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서류 검토 후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1. 총사업비가 2천2백만원을 초과하고 자부담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 2. 그 밖에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관리주체가 판단하는 경우
 - ⑤ 사업자를 선정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착수내용을 별

- 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관리주체는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 신설 2021. 6. 30.]

- 제5조의3(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화 받아야 한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 신설 2021. 6. 30.]
- 제5조의4(사업의 완료보고 및 조사 · 검사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를 마친후 별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을 완료(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제2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 해야 하며, 이 사항을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 수행 및 완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하게 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검사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6. 30.]

- 제6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제2조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에 있어서 「지방 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 다.
 -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 제7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관리비용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공동주택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여수시의회 의원 2명 이내
 - 2. 관련 분야 공무원 2명 이내
 - 3.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 4. 토목・조경・건축학과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2명 이내
 - 5.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여수지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2명 이내
 - ④ <삭제 2021. 6. 30.>

- ⑤ 지원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⑧ 지원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7조의2(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 3.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금액
 -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우선 지원
 - 2.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6. 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지원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지원위원장과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회 활동과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 2. 위원 스스로가 해임을 원할 때
 - 3. 기타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여수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대표자에 대하여는 법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3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입주자를 말한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 2.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선정에 관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3. 분쟁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조정신청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심의·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조정서가 작성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 **제11조(조정의 반려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신청을 반려하거나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인 경우
 -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분쟁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
 - 3. 소송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분쟁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 4. 조정신청의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5. 조정신청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반려 또는 중지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 6. 30.>
-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분쟁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분쟁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

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 제13조(비용 부담) ① 관계 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요청 및 분쟁의 심의·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제1항의 비용을 산출한 후 각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결정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분쟁당사자가 해당 금액을 그 위원장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조정이 반려·중지된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쟁조정위원장" 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분쟁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등) ① 분쟁조정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담당 팀장이 된다.
- **제16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 **제17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사요청서 <개정 2021. 6. 30.>
 -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28호서식의 감사 요 청 동의서 <개정 2021. 6. 30.>
 - 3. 그 밖에 감사 요청과 관련한 자료
 -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감사 실시의 결정)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감사요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를 요청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 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5. 사적인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9조(감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감사할 사항
 -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 4. 감사 기간 과 감사 범위
 - 5. 감사에 필요한 예산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반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반을 구성·운영한다.
 -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시장은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예정인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29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30.>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21조(감사 실시)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요청인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 지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 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 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 ④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22조(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

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감사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 한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수당) 시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 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25조(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1. 경로당(150세대 이상의 경우) : 50제곱미터에 세대 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2. 어린이놀이터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면적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
 -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 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 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3. 어린이집: 다음 각 목에 따른 영유아의 인원을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설면적
 - 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영유아 21명
 - 나. 500세대 이상: 40명
- 4. 주민운동시설(500세대 이상의 경우):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제2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하다.
 - ②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u>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u>(제2조 및 제5조 관련)

1. 지원한도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지 원 사 업	시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고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90 (95%)	10 (5%)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
2.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	90 (95%)	10 (5%)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3.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90 (95%)	(0/0)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4.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 · 장비의 설치	90 (95%)	10 (5%)	사업까지 신청 가능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 관리사업(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지 원 사 업	시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고
1. 단지 내 도로 보수	90 (95%)	10 (5%)	
2.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	90 (95%)	10 (5%)	
3.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90 (95%)	10 (5%)	
4.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90 (95%)	10 (5%)	그 고드의 취계된 계상 투성스계
5.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	90 (95%)	10 (5%)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6.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개선	90 (95%)	10 (5%)	관한 조례」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증강	90 (95%)	10 (5%)	신청 가능
8.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90 (95%)	10 (5%)	
9.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 · 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친환경시설 및 택배물품 보관시설의 설치 ·개선	90 (95%)	10 (5%)	
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개량에 관한 사업으로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0 (95%)	10 (5%)	

다.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지 원 사 업	시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고
1. 공동주택의 근로자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90 (95%)	10 (5%)	

2. 지원제외 대상

-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경우
-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
 - 마.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ek주택(<u>다만</u>,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 지역주택조합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u>다만</u>,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아.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여수시 공고 제2021-3070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대상지 선정)공고

「농어촌정비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업의 목적: 채소류 단지 조성
- 2. 사업의 내용: 개간 신청지(임야)를 전으로 조성
- 3. 사업의 구역
 - 위 치: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390-1번지
 - 지적면적: 1,388 m²
 - 신청면적: 200 m²
- 4. 사업예정기간: 승인일로부터 24개월이내
- 5. 사업의 효과: 채소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 6. 사업시행자 구주소: 순천시 연향중앙상기길 80, 10*동 50*호(연향동, 현대1차0파트) - 성명: 정**

7. 기타

위 토지의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 인은 상기 개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을 시 <u>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u> 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하시기 바라고,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061-659-40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6.

여 수 시 장